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940호, 제16941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개 요	1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
II. 검토의견	3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	3

I. 개 요

1.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3.

다. 회 부 일 : 2026. 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2.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3.

다. 회 부 일 : 2026. 2.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이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행정제재로서도 그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4호 삭제).

II. 검토의견

1.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법 ○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첨부하여 인지세 납부(제8조제1항)	☐ 인지세법 ○ (현행과 같음) ○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안 제13조 신설)
☐ 조세범 처벌법 ○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2조제4호)	☐ 조세범 처벌법 ○ 삭 제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경과조치: 조세범 처벌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 적용

* 김영환의원안 2026. 2. 23. 발의(의안번호 16940, 16941)

☐ 개정안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동 행위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의 작성자가 그 과세문서에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첨부함으로써 납부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통장은 1권마다, 통장 외 과세문서에는 1통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과거에는 과세문서에 소인(消印)된 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납부사실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2014년부터 전자수입인지¹⁾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또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즉,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가 별도로 없고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건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납부가 이루어짐.

□ 한편, 「조세범 처벌법」은 내국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를 위하여 각 개별세법에 규정하여 놓은 각종 의무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로, 납세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통해 의무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권의 적정행사 등으로 조세행정을 원활하게 하며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조세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의 행정법규

1) 수입인지는 인지세 외에도 소송비용, 행정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를 위하여 현금 대신 납부하기 위해 우표 형태로 정부가 발행하는 인지를 의미함.

를 위반하는 행위이나, 조세범죄가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기본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권을 해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악을 끼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처벌이 강화되면서 형사범화 되었음. 조세범은 크게 ① 조세의 부과·징수권 등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탈세범과, ② 직접적으로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조세행정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한 각종 명령·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징수권 등의 적정한 행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조세위해범(조세질서범)으로 구분할 수 있음.²⁾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이미 사용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조세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재사용을 통해 인지세를 탈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처벌하고자 입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행정형벌 제도는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에 대한 의무확보수단으로서 최후적·보충적인 것이어야 하며, 행정상의 의

2) 최상림, 「사례와 함께하는 조세범처벌법」, 2025., pp. 277~279

무이행확보라면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그 제재수단도 가능하다면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등의 수단이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음³⁾.

- 또한, 최근 형벌의 범죄 억제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침해법익이 사소한 범죄행위나 단순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도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행정형벌의 대상이던 행정목적의 직접적 침해행위도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으로 포섭되는 경향이 있음.⁴⁾

□ 위 개정안들은 「인지세법」상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그 위반 수준에 비해 과도하며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목적임.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8월 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운영하여 2025년 9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 형벌보다는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음.

3)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결정

4) 법제처, 「과태료금액 지침」, 2019. 2.

□ 위 2건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첫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은 조세질서적 측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처벌은 행정질서벌이 적합하다고 보여짐.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인 데 비하여,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 지는 것⁵⁾임.

인지세는 별도의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의무 없이 「인지세법」에 세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금융기관 등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하여 과세문건 작성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타 세법 대비 납부세액 및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한 측면이 있음.

즉, 인지세 납부의무가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단순·명확하다는 측면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타 조세법 대비 의무태만의 측면에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질서벌로서 제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임.

□ 둘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는 타 조세질서 위반행위 대비 경미한 수준이므로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행정목적인 납부의

5) 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마400 결정

무에 대한 강제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봄.

인지세 납부세액은 최소 50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다소 소액이고 전자수입인지에 따른 납부세액은 3,643억원에 불과⁶⁾하므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는 타 조세질서 위반행위 대비 경미하다고 볼 수 있음.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

과세문서	세율(건당)	
	기재금액	세율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천만원~3천만원	2만원
2.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천만원~5천만원	4만원
3. 도급·위임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5천만원~1억원	7만원
4. 광업권·무체재산권·어업권·출판권·저작인접권·상호권의 양도증서	1억원~10억원	15만원
5. 시설물이용권의 입회·양도 증서(회원제골프장, 휴양콘도미니엄 등)	10억 초과	35만원
6.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 증서	3천원	
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	300원	
8. 상품권 및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5만원 초과분)	권면금액	세율
	1만원	50원
	1만원~5만원	200원
	5만원~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9.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11. 시설대여 계약서	1만원	
12.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 - 사채보증 증서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 증서 -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 증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자금 용자에 대한 신용보증 증서	1만원 1,000원 200원	

6) 2025년 인지세 징수액은 8,292억원으로 전체 국세 373.9조원 대비 0.2% 수준이며, 전자수입인지 판매에 따른 징수액 3,463억원은 전체 국세 대비 0.9%를 차지함.

[과세문서별 인지세 납부세액]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현금 납부 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3,211	2,545	2,121	2,615	2,831
	상품권, 선불카드	340	402	369	385	421
	예금통장, 보험증권 등	165	160	165	174	200
	신용카드 등 가입신청서	201	108	73	72	80
	모바일 상품권	23	24	34	49	49
	시설대여 계약서	25	24	24	21	22
	도급, 위임에 관한 증서	15	17	18	16	16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15	15	13	13	13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6	7	8	7	7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	4	4	3	3	3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2.4	2.1	2.0	0.8	0.8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	0.02	0.01	0.02	0.01	0.01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양도에 관한 증서	0.10	0.01	0.01	0.01	0.01
	소계	4,007	3,307	2,829	3,355	3,643
	한국은행분 ¹⁾	5,784	6,202	5,052	4,605	4,649

주: 1)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하는 전자수입인지 판매금액으로, 과세문서에 첨부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또한, 과태료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최대 2천만원으로 규정되는 경우 정부의 「과태료금액 지침」상 기준에 따르면 과태료 6백만원(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 부과될 것으로 예측⁷⁾되는데, 인지세 납부금액이 건당 최대 35만원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시 미납액 대비 최소 171배 이상 금전적 제재가 이루어지므로,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기회비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7) 「과태료금액 지침」(2019.2.) 中

부과금액의 설정범위

부과금액은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서 설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해야 한다.

- 법률취지를 존중하려면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금액의 일정 범위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
- 법률취지를 존중하고, 과태료 상한액은 보통 절반씩 줄어드는(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 방식으로 세분되는 점을 반영하여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서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을 설정하며,
 - 주체·기간·경중 등에 따른 차등, 정책적 고려 등의 특별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30% 이상에서 설정

□ 참고로 최근 10년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으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함⁸⁾.

□ 한편,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인지세법」 개정안의 과태료 상한액은 현행 「조세범 처벌법」 상의 벌금의 상한과 동일한 2천만원으로, 형사처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되 위반행위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147

8) 처분일자 2022. 11. 15., 부과금액 벌금 1백만원(자료: 재정경제부)